

대구광역시 복구 용역 최종보고
22-11-22

보고용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기본 조례에 대한 연구

2022. 11.

 한수 기업정책연구소

안내문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연구수행기관의 견해이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기본 조례에 대한 연구 ”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연구책임자 : 김건훈

참여연구원 : 박진홍

김한글

김소연

정혜진

최준호

목 차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현황 조사분석

1. 대구 북구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황
2.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변화 과정
3. 주요 지자체 청년정책 및 제도 현황
4. 해외 주요국의 청년정책 및 제도 현황
5. 국내외 청년정책의 시사점

III. 청년기본법 및 조례

1. 「청년기본법」의 제정 연혁
2.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및 법령체계
3. 주요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개정사항 분석
4. 「청년기본법」과 자치법규 비교의 시사점

IV.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 도출 및 향후 과제

1.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도출
2.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향후 과제 도출

부록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별첨 : 연구단체 참여 의원현황 등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성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
- 또한, 「청년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북구는 2019년 9월에 선제적으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된 것임.
- 따라서,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법체계를 맞추으로써 조례 현실화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모범이 되는 「청년기본법」 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타 자치단체 등의 「청년 기본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대구광역시 복구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복구
- 시간적 범위 : 2022년
- 내용적 범위
 - 「청년기본법」 관련 조사분석
 -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기본조례」 검토 및 개정안 도출
 - 중앙정부 청년정책 및 지자체 청년정책 검토 및 시사점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청년기본법」 과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기본조례」 비교검토

- 2020년 제정 발의된 「청년기본법」을 검토·분석 이론적 토대 구축
-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기본조례」에 대한 검토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 검토.

II. 대구 복구 현황 및 청년정책 조사분석

1 대구광역시 복구 현황

(1) 경제 현황

- 대구광역시 고용률은 2015년 59.7%로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엿보이다, 2020년 코로나 위기로 가장 낮은 비율인 56.6%로 낮아졌음. 2021년에는 58.2%로 증가하였음.
- * 15~64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고용률 : 67.2%, 취업자는 123만 8천 명
- 대구광역시 실업률은 2012년도의 3.3%에서 2014년도에 3.8%로 소폭 증가하다 2018년 4.4%까지 지속해서 높아졌음. 이듬해인 2019년에 3.7%로 낮아졌다가 2020년도에 3.9%로 다시 상승했고, 2021년도에는 3.7%로 다시 낮아졌음.

<대구 경제지표>

(단위 : 천 명, %)

연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	고용률 (%)	15-64세 고용률(%)
2012	2,070	1,250	1,208	41	821	60.4	3.3	58.4	63.3
2013	2,080	1,246	1,205	41	834	59.9	3.3	57.9	63.2
2014	2,090	1,275	1,227	49	815	61.0	3.8	58.7	64.3
2015	2,096	1,291	1,246	45	805	61.6	3.5	59.4	65.4
2016	2,102	1,301	1,247	54	802	61.9	4.1	59.3	65.3
2017	2,108	1,291	1,239	52	817	61.2	4.0	58.8	65.0
2018	2,106	1,282	1,226	56	824	60.9	4.4	58.2	64.2
2019	2,104	1,266	1,219	47	838	60.2	3.7	57.9	64.2
2020	2,091	1,232	1,184	48	859	58.9	3.9	56.6	63.0
2021	2,090	1,265	1,217	47	825	60.5	3.7	58.2	65.5

(자료: KOSIS)

- 2022년 상반기 복구의 취업자는 21만 4천4백 명으로 전년 동기(204.2천

명) 대비 5.0%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55.1%로 전년 동기(52.7%) 대비 2.4%p 증가하였음.

- 2022년 상반기 북구의 실업자는 5천6백 명으로 전년 동기(10.4천명) 대비 4천8백 명(-46.2%)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기(4.8%) 대비 2.3%p 하락함.

2022 상반기 북구 주요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구 분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증 감	증감률
▶ 경제활동인구 (참 가 율)	214.6 (55.4)	220.0 (56.6)	5.4 (1.2)	2.5
▶ 취 업 자 (고 용 률)	204.2 (52.7)	214.4 (55.1)	10.2 (2.4)	5.0
▶ 실 업 자 (실 업 률)	10.4 (4.8)	5.6 (2.5)	-4.8 (-2.3)	-46.2

출처: 북구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보고서

□ 대구광역시 GRDP 현황

- 대구광역시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에서 달서구는 20.8%, 북구는 18.2%를 각기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를 구성하는 전체 8개의 지역 자치단체 중 두 구(區)가 40%를 차지하고 있음.

<대구광역시 GRDP (단위:백만 원)>

시군구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구광역시	51,822,013	53,167,211	54,832,958	56,714,479	58,094,694
북구	9,787,970	9,857,246	10,207,588	10,863,537	10,578,872
중구	5,027,892	5,129,208	5,238,995	5,426,313	5,374,655
동구	6,376,313	6,266,494	7,086,698	7,036,716	7,671,520
서구	3,206,379	3,390,758	3,479,958	3,514,231	3,591,916
남구	2,336,750	2,383,509	2,729,404	2,947,000	3,219,019
수성구	6,955,681	7,430,232	7,364,608	7,716,974	8,134,646
달서구	11,014,202	11,277,453	11,388,929	11,620,034	12,090,472
달성군	7,116,825	7,432,311	7,336,778	7,589,674	7,433,594

(자료: KOSIS)

□ 산업단지의 분포

- (대구도심융합특구) 경북대학교 캠퍼스 내 운동장 부지, 경상북도청 후적지를 위주로 대구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대구창조경제단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구광역시,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스타트업의 육성과 지역 창업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구종합유통단지) EXCO(Daegu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 (대구제3산업단지) 주로 경공업, 중소기업으로 대구 토종 산업 중 하나인 안경테 산업과 최근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로봇산업을 유명.
-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북구의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82.4천 명), ‘도소매·음식숙박업’ (55.2천 명), ‘광·제조업’ (40.1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8.3천 명), ‘건설업’ (17.3천 명) 순으로 많았음.
- 직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판매 종사자’ (59.3천 명),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 (45.4천 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4천 명), ‘사무 종사자’ (38.1천 명), ‘단순 노무 종사자’ (24.7천 명) 순으로 많았음.

□ 문화체육관광 분포

- (북구 8경) 금호강하중도, 꽃보라동산, 운암지수변공원, 팔달대교 야경, 경북대학교 캠퍼스, 함지공원, 구암서원, 침산정은 대표적 관광지

- (북구의 길) 안경특화거리: 400여 개 안경 제조업체가 밀집한 3공단 내 침산·노원동 일원이며, 전국 안경 제조업체의 82%가 모인 안경산업의 태동지로 2006년에 특구로 지정,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안경 거리, 안경 조형물, 아이빌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메카로 불림.
- (자연 체험관광과 전통시장) 칠성시장은 대구 최대 규모 자랑함, 대구 시민운동장과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이 조성되어 있음.

(2) 인구 현황

- 통계청 인구자료를 조사해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전국인구가 2020년 2021년 감소함. 2020년 ▲147,105명, 2021년 ▲241,863명 감소함.
-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2015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북구는 북구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인구 추이 10년을 살펴 보면 2012년도 452,836명에서 2022년 437,894명으로 10년 사이 14,942명이 감소했음.

행정구역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52,672,425	52,857,893	52,950,306	53,072,685	53,121,668	52,974,563	52,732,700
대구광역시	2,513,970	2,511,050	2,501,673	2,489,802	2,468,222	2,446,144	2,412,642
북구	447,887	445,230	446,201	444,616	442,943	444,923	441,642



출처: KOSIS, 북구 2022년 9월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 청년인구의 현황

-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20대 청년 35,000여 명이 취업하기 좋은 대학, 일하기 좋은 직장을 찾아서 지방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향했음. 대구지역의 청년인구는 2010년 전체 인구 대비 27.1%였으나 2020년에는 비중이 26.6%로 낮아졌음. 지난 10여 년 간 대구 청년의 순유출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그 폭이 컸음.
-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
- 이러한 청년층 인구 유출의 가속화는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음.

청년인구 변화

<출처: KOSIS통계청, (단위 명)>

행정구역별	연령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전국	계	47,732,558	48,782,274	50,515,666	51,529,338	51,829,023	51,638,809
	20 - 24세	3,943,757	3,709,318	3,135,901	3,557,583	3,249,676	3,121,322
	25 - 29세	4,422,339	3,917,226	3,731,055	3,141,465	3,556,477	3,534,601
	30 - 34세	4,509,212	4,374,750	3,950,726	3,731,387	3,145,998	3,216,061
	20 - 34세	12,875,308	12,001,294	10,817,682	10,430,435	9,952,151	9,871,984
대구광역시	계	2,524,253	2,511,306	2,511,676	2,487,829	2,418,346	2,385,412
	20 - 24세	218,850	200,167	164,476	181,783	159,933	150,657
	25 - 29세	236,012	198,726	176,880	144,972	161,601	158,264
	30 - 34세	235,425	215,096	182,018	163,062	134,656	136,780
	20 - 34세	690,287	613,989	523,374	489,817	456,190	445,701
북구	계	409,353	464,559	452,505	443,119	440,263	437,008
	20 - 24세	32,030	33,579	28,720	32,858	32,197	31,104
	25 - 29세	37,999	35,646	29,974	25,521	29,939	29,907
	30 - 34세	41,945	46,401	34,164	29,166	24,951	25,401
	20 - 34세	111,974	115,626	92,858	87,545	87,087	86,412

지난 10년간 대구 청년 순유출 규모

<출처: KOSIS통계청,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8,668	8,410	8,364	7,910	7,813	9,064	6,912	5,291	5,716	6,647	12,293	7,846

(3) 교육 현황

- 북구 통계 브리핑 6호를 살펴보면 북구 청년층(20세~29세)은 대학(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가 위치한 산격 3동과 복현 1동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

북구 초중고 및 대학 등 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 (과)수	교실수	학생수		
				남	여	
2017년	169	3,000	2,392	142,277	68,541	52,155
2018년	169	2,922	2,419	117,167	66,151	51,016
2019년	166	2,755	3,463	108,395	59,069	49,326
2020년	164	2,725	3,421	121,668	62,397	59,271
2021년	165	2,785	3,861	108,101	60,103	47,998
유치원(공사립)	70	336	410	6,720	3,387	3,333
초교(공립)	39	981	1,403	21,686	11,131	10,555
중학교(공립)	20	440	731	9,860	5,120	4,740
중학교(사립)	3	81	116	2,220	1,055	1,165
일반고(공립)	5	142	234	3,679	1,572	2,107
일반고(사립)	8	250	384	5,309	2,639	2,670
특성화고(사립)	1	15	59	326	326	-
특목고(공립)	2	12	37	288	128	160
자율고(공립)	1	21	32	394	394	-
전문대학	3	54	-	25,461	15,232	10,229
대학(교)	1	79	79	25,401	15,558	9,843
대학원	11	323	323	6,462	3,383	3,079

<자료 : KOSIS,>

2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변화 과정

(1) 시기별 청년 정책 추진 경과

- (김대중 정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음.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으며 청년이라는 특정 대상을 주로 하는 정책은 아니었음.

김대중 정부	
시기	1998~2002
목표	외환위기 극복/ 실업자 유형 구분 / 실업문제 종합대책
설치기구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전달체계	국무총리실 산하 실업대책실무위원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
주요특징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 정부지원인턴제, ‘워크넷’ 운용,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등

- (노무현 정부) 실업 대책을 위해 본격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청년’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였음.

노무현 정부	
시기	2003~2007
목표	양극화 해소 / 고용 친화적 성장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설치기구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전달체계	당정공동특별위원회,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고졸 이하 고용 T/F, 중앙부처고용지원센터, 지자체, 기업·대학

주요특징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고용정보센터 확충, ‘잡넷’ 운용, 평생교육능력개발계획, 고용장려금 지급, 맞춤형 서비스 구축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3.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분야: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강화,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 세부 36개 과제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5.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분야: 진로·직업지도 강화, 대학 경쟁력 강화,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서비스, 대학취업지원기능 강화, 직업 및 고용정보생산·보급확대, 청년실업대책 성과 제고 · 세부 54개 과제
청년실업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책 (2007.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분야: 진로·직업지도 강화, 대학 경쟁력 강화,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군 복무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취약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등 · 세부 104개 과제

- (이명박 정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 국무총리실 산하에 고용사회안전망을 두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2
목표	세계금융위기 극복 / 선취업 후진학 / 국가고용전략회의
설치기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전달체계	일자리 대책 평가단, 국무총리실 산하 고용사회안전망 T/F, 중앙부처고용지원센터, 지자체, 기업·대학
주요특징	직업능력개발체제, 산학 연계 체제 구축, 평생학습체제 확립, 해외 취업창업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졸자 취업 기회확대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8.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직업체험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 세부 15개 과제
청년고용 추가대책 (2009.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분야: 교육훈련창업지원, 청년인턴, 단기일자리, 취약청년지원 · 세부 18개 과제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2010.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분야: 청년 일자리 71,000개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 세부 28개 과제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201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분야: 일터가 곧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겠습니다. 지방대생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청년 벤처창업과 벤처공동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세부 31개 과제

- (박근혜 정부)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목표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별개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립하여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박근혜 정부	
시기	2013~2017.4
목표	맞춤형 고용·복지
설치기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전달체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중앙부처(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기업·대학
주요특징	직업 능력개발체제, 산학 연계 체제 구축, 평생학습체계 확립, 해외 취·창업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졸자 취업기회 확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2013.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앞당기기, 일자리를 만들고 보상시스템을 바꾸자, 청년의 창업 열기 되살리기 · 세부 61개 과제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학교 교육·직업훈련 내실화-자격 불일치 해소, 구직·취업-선취업·후 진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경력단절 방지 · 세부 48개 과제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 (2015.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 충격 완화, 현장 중심이 인력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 세부 54개 과제
청년 고용대책 보완방안 (2018.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취약청년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 연계 강화, 창업 활성화, 공공부문 고용 확충 · 세부 62개 과제

-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 1번가’를 설치하여 청년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자 하였음. 전국을 권역별로 돌며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오프라인 청년 1번가’도 운영하였음.

문재인 정부	
시기	2017.5~2020.12
목표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설치기구	청와대 청년정책관실 신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신설
전달체계	청와대 청년정책관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중앙부처(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 기업·대학
주요특징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 기업 지원강화, 창업 활성화, 해외 취·창업 등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자료 (2017.3.22.)	· 관계 부처 합동으로 6개 주제로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자료 발표 - 청년 일자리 대책(기재부 총괄 청년고용 촉진방안(노동부 총괄),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교육부 총괄),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중기부 총괄),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창출방안(행안부 총괄),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방안(기재부 총괄)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2019.7.17.)	·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취약청년 자립 지원 분야의 추가적인 과제들을 포함

(2) 청년정책의 발자취

- 청년정책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타 지자체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었음. 2015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조례는 2014년 지방선거 이후인 2017년 2월 기준 11개 광역지자체와 25개 기초지자체에 제정되었고, 2018년 지방선거 이후 2021년 9월 기준 16개 광역지자체와 197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되었음.

- 전국의 지자체가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를 토대로 유사하게 법과 정책 결정 과정을 도입하면서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설립되었음.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청년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함)
- 이들 위원회는 ①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결정함.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기본법」 시행(’ 20.8.5.)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 ~ ’ 25년)」이 지난 12.23.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목표(비전)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기본계획	분야
일 자 리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 취업역량 제고 지원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청년 노동권익 보장
	공정채용 기반 구축· 직장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교육	고른 교육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 지역 청년 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강화 ·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주거	청년 주택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총 27만 3000호 공급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교육부)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가구내 부모와 분리거주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 청년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 ·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 청년 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복지문화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청년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청년 지원강화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빈곤 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 응원 · 청년문화활동 기반 강화 ·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참여권리	청재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 청년이 열어가야 하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하나로(온라인) ·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 확대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금융·주거 권익보호 청년교육 · 청년주도형 교류 지원

-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청년정책의 첫 방향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음.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청년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실천과제	대표 세부내용
청년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사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취업지원 혁신 • 청년 창업 기반 강화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원가주택 도입, 주택청약제도 개선 •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출시·개선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 • 국가장학금 대상·지원금 확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기반 구축 • 청년 자신형성 지원 • 취약청년 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 청년도약계좌 출시 • NEET 청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 청년정책 전달체계 등 인프라 정비 •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보좌역 배치·운영 • 청년맞춤형 원스톱 플랫폼 개발 • 자격제도 실무경력 요건 완화

<자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청년 정책 인프라 기틀 세우기 위해 노력) 청년 정책이 ‘국민에게 드리는 20대 약속’ 중 17번째 약속(국정과제 3개)으로 비중 있게 포함됐으며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 정책을 ‘청년’ 국정과제 아래 하나로 묶어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임.

국정과제에는 취약 청년 대상 ‘청년도약준비금’ 과 같이 전례 없는 청년 정책과 함께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의 내용이 세부과제로 포함되었으며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기존 41억 원에서 545억 원으로 13배 이상 대폭 증가시킴. 이는 청년정책조정실의 기능을 강화해 청년 정책을 조율하는 지휘 본부(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조치한 것임.

(3) 중앙부처별 청년정책 현황

- 「청년기본법」 근거조항 및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과제 및 예산 반영

<「청년기본법」상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②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시행령」상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 내용>

-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6.30.>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수(개) 및 청년예산(억원)

기관명 ¹⁾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21년 ²⁾	'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	12	0	24	1	5	4,734	8,646
문화체육관광부	42	9	0	5	27	1	9,041	8,334
고용노동부	41	34	0	5	0	2	61,100	59,801
국토교통부	39	6	22	8	1	2	84,825	87,170
교육부	38	2	2	30	1	3	50,291	54,989
중소벤처기업부	25	20	0	4	0	1	7,725	8,033
농림축산식품부	17	10	1	5	0	1	7,545	6,968
여성가족부	15	6	0	1	5	3	303	269
보건복지부	11	0	0	0	11	0	4,674	1,624
국무조정실	9	0	0	0	0	9	14	20
금융위원회	9	2	2	0	4	1	350	686
기획재정부	8	7	0	0	1	0	16	16
해양수산부	7	3	0	4	0	0	79	48
산업통상자원부	7	5	0	2	0	0	2,561	2,577
행정안전부	6	4	0	0	0	2	3,579	2,853
환경부	6	3	0	2	0	1	407	541
식품의약품안전처	6	0	0	6	0	0	19	26
특허청	6	3	0	3	0	0	81	83
농촌진흥청	6	3	0	2	0	1	46	94
산림청	5	3	0	2	0	0	80	66
국방부	4	1	0	1	2	0	371	2,947
인사혁신처	4	4	0	0	0	0	0	0
국가보훈처	4	2	0	0	0	2	78	97
병무청	4	2	0	1	1	0	26	29
문화재청	3	2	0	0	0	1	25	49
통일부	2	1	0	0	0	1	1	1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0	2	0	9
국민권익위원회	2	1	0	0	0	1	2	2
방송통신위원회	2	0	0	2	0	0	3	3
조달청	2	2	0	0	0	0	0	2
외교부	1	0	0	0	0	1	344	493
방위사업청	1	1	0	0	0	0	18	17
합계	376	148	27	107	54	40	238,338	246,493

1) 과제수 기준 2)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기준(추경 후)

<자료:국무조정실>

보도 일시	2022.6.30.(목) 14:00 이후 사용 가능	배포 일시	2022.6.30.(목) 10:00
담당 부서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책임자	팀 장 유미년 (044-200-1988)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044-200-1996)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2022년 청년정책 평가결과 최초 공개

-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 발표 -

□ 평가 특징

- '21년 시행계획 수립 이후, 청년정책 전반에 걸친 최초의 평가
- 청년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평가
-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위해 청년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참여

□ 평가 결과

【중앙부처】

- (종합평가) 32개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345개 청년정책 **전** 과제를 평가한 결과, **보통 등급이 가장 많았음**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개선권고	합계
과제수	41개	42개	158개	85개	19개	345개
비율	11.9%	12.2%	45.8%	24.6%	5.5%	100.0%

- (심층평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청년 및 사업 담당자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종합평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 개선방안 도출

【지사체】

- (우수사례) 청년정책 추진 독려를 위해 우수사례 5건 선정·공유

최우수 과제 2건			우수 과제 3건		
광역	(경남) 청년 정보플랫폼 구축	광역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세종) 세종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조성	
기초	(천안) 천안-아산 청년이 함께 꽃 피우는 상생협력 교류	기초	(김제) 김제 청년공간 이다(E:DA) 운영		

□ 결과 환류

- 우수과제는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미흡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지속 점검·관리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6.30.>

3 주요 지자체 청년정책 및 제도 현황

□ 청년정책 유형 분류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의 유형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포털」에 따르면, ①취업지원 ②창업지원 ③주거·금융 ④생활·복지 ⑤정책참여로 분류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정책지원 유형 분류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단체의 청년정책 유형을 분류하였음.

1) 서울특별시

□ 청년정책 현황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합계
64	26	23	41	22	176
(36%)	(15%)	(13%)	(23%)	(13%)	(100%)

(동향)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원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일자리 지원 분야(취업 및 창업지원)이며, 전체 176개 사업 중 51%에 해당하는 90개의 지원사업이 있음.

(2025년 서울청년 기본계획)을 설립하여 176개 과제 중 50여 개의 핵심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 중.

- 서울시는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복지·금융, ⑤참여·공간으로 구분하여 총 50개의 정책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조 2천억 원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1년~25년 청년정책 취업 및 창업지원의 지원사업의 종류는 많지만 예산 사용 내용을 살펴볼 경우, 주거 부분(4조 6천억)으로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에서 청년 지원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진행(2조 9천억)하는 예산이 전체의 46%를 차지함.
-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주거 부분에 많은 부분의 예산¹⁾을 투입하고 있음.
- 전체 예산은 일자리 부분(8,626억 원, 14%) 복지·금융 부분(6,415억 원, 10%) 참여·공간 부분(761억, 1%) 교육·문화 부분(574억 원, 1%) 순으로 지원함.
- 도시의 특성에 맞게, 도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25 서울청년 기본계획 사업목록>

분야	정책과제명	소요예산 ('21~25년) 단위 : 백만원
	총 계	6,281,305
일자리	1.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개선	20,098
	2. 취업날개서비스 확대	6,383
	3.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추진 개선	20,000
	4.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확대	10,317
	5. 서울형 뉴딜일자리 개선	391,237
	6. 미래청년 일자리사업 개선	50,300
	7.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개선	11,800
	8. 청년 창업 꿈터 운영	2,958
	9.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개선	10,000
	10.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신규	3,659
	11. 캠퍼스타운 밸리 조성 개선	238,960
	12.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운영 신규	90,863
	13.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사업 신규	6,100
	소 계	862,675
주거	14.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1,133,275
	15.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602,933

1) 청년임대주택사업 제외 예산 3조 3천억 중 1조 7천억 예산 배정. 전체 예산의 51% 차지함.

분 야	정책과제명	소요예산 ('21~25년) 단위 : 백만원
	16. 노장청 웨어하우스 개선	450
	17.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확대	381,499
	18.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확대	1,796,552
	19.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확대	727,665
	20.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신규	1,000
	소 계	4,643,374
교육·문화	21. 등록금 지원 장학사업	20,040
	22. 서울희망공익인재 장학금	1,445
	23. 서울우수인재 장학금	2,075
	24.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	1,530
	25. 청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개선	5,597
	26. 천호사거리 지하 청년문화공간 조성 신규	26,800
소 계	57,487	
복지·금융	27. 청년수당 개선	301,170
	28. 희망 두배 청년통장사업 확대	139,992
	29.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7,725
	30.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사업	1,160
	31. 청년 마음건강 지원 확대	13,000
	32.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640
	3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확대	24,458
	34.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6,850
	35. 서울전입 청년1인가구 웰컴박스지원 개선	3,200
	36.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선	27,828
	37. 서울청년 함께 RUN 신규	2,500
	38. 서울 영테크(재테크 상담) 신규	5,980
	39. 청년 대중교통 지원 사업 신규	90,300
	40. 서울청년포털(몽땅정보통)운영 신규	2,835
	41. 사회초년생 프로그램 개발·운영 신규	1,800
42. 청각장애인 문자통역서비스 지원 확대	700	
43. 청년 이사 지원 신규	11,440	
소 계	641,578	
참여·공간	44.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지원 개선	736
	45.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개선	2,790
	46.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개선	20,798
	47.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개선	8,775
	48.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개선	9,422
	49.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개선	19,774
50.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개선	13,896	
소 계	76,191	

<자료 :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2) 부산광역시

□ 청년정책 현황(2022년)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합계
76 (53%)	20 (14%)	9 (6%)	17 (12%)	22 (15%)	144 (100%)

(동향) 취업·창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지원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청년희망 프로젝트) 활력 있는 청년정책 추진, 체감도 높은 청년주도형 일자리 추진, 청년 자립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관리하고 있음.

- (활력있는 청년정책 추진) - 떠나간 청년을 되돌아오게 하고, 청년들이 희망과 행복을 갖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에게 특화된 정책 추진 필요
- (체감도 높은 청년주도형 일자리 추진)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 의견 수렴 체계 구축 →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 내도록 설계
- (청년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 등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 4대전략 15대 핵심과제 선정

추진전략	핵심과제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F81BD; color: white; padding: 20px;">탐색</p>	<p style="text-align: center;">진로계획 및 역량 강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디딤돌카드 지원 확대 ▶요건완화, 지원방식(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 ▶청년커뮤니티,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진로탐색 과정 지원 ▶청년 깎이어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F81BD; color: white; padding: 20px;">참여</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참여 생태계 조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청년활동 보장 ▶ 미비점 보완 및 청년들의 시정참여 확대 반영 ⑤ 청년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열린공간, 청년활동 광역거점 공간으로 조성 ⑥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2022년까지(단계적) 15% 목표 ⑦ 청년활동 공간 활성화 ▶청년공간의 복합적 활용 및 다목적 활동공간 조성 ⑧ 청년정책네트워크 상설 운영 ▶정책의 제도화 → 청년의회로 발전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F81BD; color: white; padding: 20px;">자립</p>	<p style="text-align: center;">일자리 연계 및 권익 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청년 주도형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 활성화, Bottom-up 사업 발굴, 관리체계 강화 ⑩ 청년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 ▶관련 조례 개정, 청년 노동권익 보호 ⑪ 청년 친화적 취·창업 환경 조성 ▶고용환경 개선, 청년고용 친화적 여건 조성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F81BD; color: white; padding: 20px;">안정</p>	<p style="text-align: center;">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⑫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임대주택 지원 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청년 SAFE 존, 광역(기초)정신자활센터 운영 ⑭ 청년 부채 문제 해결 및 자산형성 지원 ▶청년금융교육, 학자금 대출(상환)이자 지원, 청년부비론(생활안정자금), 청년희망날개통장(자산형성) ⑮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부산청년주간, 청년문화박람회, 아트페어 개최

3) 대구광역시

□ 청년정책 현황(2022년)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합계
40 (43%)	15 (16%)	8 (9%)	20 (22%)	10 (11%)	93 (100%)

(동향)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지원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지역 특화성을 살린 지원사업 외에도 AI·로봇 등 4차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대구청년 꿈꾸는대로) 대구형 청년보장제로 5단계 지원프로젝트로 진행되며, 청년 주기에 맞게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청년도전 프로젝트) 교육기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 생활 지원, 취·창업지원 3부분으로 청년의 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원함.
- (청년희망 프로젝트) 사회진입기에 있는 취준생, 아르바이트생, 니트족이 대상임. 대구형청년수당, 진로 탐색, 청년 돌봄, 일 경험 및 취·창업지원 4부분으로 구성되어 청년의 희망을 육성함.
- (청년행복 프로젝트) 직업기에 있는 취·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주거안정, 창업지원, 예술가 육성지원 4부분으로 구성되어 청년의 행복을 높이는 지원정책임.
- (청년자강 프로젝트) 정착기에 있는 지역 활동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며 공간조성, 지원 기반 강화, 사회참여, 청년문화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구 청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지원정책임.

- (청년귀환 프로젝트) 대구광역시에서 이동한 출향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청년 유입지원, 대구청년 정체성 찾기 2부분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비전	청년의 미래와 함께하는 대구				
정책목표	역동적인 청년	편안한 청년	성장하는 청년	행복한 청년	주체적인 청년
전략영역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권리
추진 전략	국가·지역 간 역할 분담	정책의 선별적 확대 추진		정책의 연계강화로 시너지 창출	

4) 대구광역시 복구

□ 청년정책 현황 (2022년)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복지·문화	참여권리	합계
6 (20%)	5 (17%)	3 (10%)	12 (40%)	4 (13%)	30 (100%)

- **(동향)** 복구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창업 분야와 문화복지 분야 두 부문의 정책적 비중이 큼. 산업단지활용하는 기업매칭, 인턴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 스스로 문화를 조성하고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 조성되어 있음. 다만, 주거환경·교육·참여권리 분야의 정책은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원정책을 확대할 여지가 있음.
- **(문화복지)** 타 지자체에 비해 문화 지원정책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음.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 외에도, 청년의 건강을 증진하는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사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주거환경 분야)** 타 지자체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미비함. 주거 지원으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정주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사업과 스마트 타운 조성사업이 지속 사업으로 운영.
- **(참여권리)** 인프라 정책으로는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사업이, 청년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솔루션스쿨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대구광역시 북구 2022년 청년정책 예산편성안>

<단위:천 원>

구분		2022년 편성예산(안)		
		사업명	추진부서	예산규모
일자리	취업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내일사업	일자리정책과	329,000
		지역사랑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	202,000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	20,000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	237,500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	일자리정책과	10,000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정보통신과	678,000
	창업	청년창업가 초기자금 지원사업	정보통신과	140,000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50,000
		코워킹공간(청년놀이터)조성사업(리모델링, 신축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6,300,000
		복잡소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5,033,000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민생경제과	5,000	
주거 환경	주거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기획조정실	2,070,000
	정주환경 개선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3,000,000
		스마트 타운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1,000,000
교육	교육	청년웹작가 양성학교	기획조정실	7,500
		대학연계 도시재생 스튜디오	도시재생과	9,000
문화 복지	문화 예술	대학문화예술키움 프로젝트	도시재생과	300,000
		대학문화예술존 청문당 조성	기획조정실	1,160,000
		청년부키탐방대	기획조정실	5,000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기획조정실	5,000
		청춘 페스티벌	기획조정실	20,000
		대학창작가곡제(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예술과	23,000
	자립 기반 조성	청년희망키움통장	복지정책과	82,957
		청년저축계좌	복지정책과	425,678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정책과	283,909
	건강 증진	예비부모 건강행복품다 웨딩건강검진사업	보건과	9,620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복지정책과	2,00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정책과	42,286	
참여 권리	인프라	어울림리닝센터 조성사업(계속)	도시재생과	6,000,000
	참여 프로 그램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기획조정실	3,600
		청년솔루션스쿨	기획조정실	30,000
		북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	혁신전략실	5,970

- 2022년 전체 예산 275억 중 공간 조성사업 및 정비사업이 이 225억으로 82%를 차지. 직접 지원예산은 약 50억 수준임.
- 공간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일자리 17억원(33%), 주거환경 21억(41%), 교육 0.2억원(0.3%), 문화복지 12억원(24%), 참여권리 0.4억(0.8%) 차지함.

<대구광역시 북구 2023년 청년정책 예산편성안>

<단위:천원>

구분		2023년 편성예산(안)			
		사업명	추진부서	예산규모	
일자리	취업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내일사업	일자리정책과	285,000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	189,000	
		맞춤 돌봄 종사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89,000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	120,000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	일자리정책과	20,000	
	창업	청년창업가 초기자금 지원사업	정보통신과	140,000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40,000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도시재생과	240,000	
		코워킹공간(청년놀이터) 조성사업(리모델링, 신축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2,300,000	
		복잡소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전년도지속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민생경제과	5,000		
주거 환경	주거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기획조정실	1,114,000	
		1인가구 청년지원(신규)	기획조정실	5,000	
	정주환경 개선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전년도지속	
		스마트 타운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전년도지속	
교육	교육	고등교육거점지구사업 참여(신규)	평생학습과	1,500,000	
문화 복지	문화 예술	대학문화예술키움 프로젝트	도시재생과	300,000	
		청년부키탐방대 시즌2	기획조정실	5,000	
		청년 라이프스타일 발굴지원	기획조정실	30,000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기획조정실	5,000	
		청춘 페스티벌	기획조정실	30,000	
		대학창작가곡제(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예술과	23,000	
	자립기반 조성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정책과	1,921,668
	건강 증진	예비부모 건강행복품다 웨딩건강검진사업	보건과	13,400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복지정책과	4,00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정책과	52,256	
참여 권리	인프라	어울림러닝센터 조성사업(계속)	도시재생과	전년도지속	
		참여 프로 그램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기획조정실	3,600
		북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	혁신전략실	7,020	

- 2022년도에 이어 간접 지원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약 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약 11억 원) 증가함.
- 일자리 11억 원(18%), 주거환경 11억 원(18%), 교육 15억 원(24%), 문화 복지 24억 원(39%), 참여권리 0.1억 원(0.2%)를 차지함.
- ‘22년 대비 교육 부분 증가금액은 국비 지원에 의한 거점지구사업이며, 자립기반 조성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액도 대폭 증가함.

□ 대구광역시 복구 현황조사활동.

- (정보공개 요청)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정책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기본조례」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5년마다 수립하게 된 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처리기관	복구	통지일자	2022.11.23
청구내용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관련 예산집행 내역(2017년~2021년)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전체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정책위원회 명부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공개내용	접수번호-10045919(2022.11.11.)호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청구자 : 박진홍 2. 청구내용 -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관련 예산집행내역(2017년~2021년)(부존재) ※ 2022~2023년 청년관련 예산편성내역 참고 -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전체(공개) -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정책위원회 명부(공개) - 대구광역시 복구 청년정책 기본계획(부존재) 3. 공개여부 : 공개(부존재 정보 제외) 4. 공개방법 : 정보통신망(전자파일) 5. 기타 세부사항 : 정보공개결정통지서(붙임) 참조. 붙임 1. 청년관련 예산 편성내역. 2. 회의록(2021.04.27.). 3. 회의록(2021.09.16.). 4. 청년정책위원회 명단(2022.07.13. 현재). 5. 결정통지서. 끝.		
공개자료	청년관련 예산 편성내역.xlsx 회의록(2021.04.27.).hwp 회의록(2021.09.16.).hwp 청년정책위원회 명단(2022.07.13.현재).hwp		

5) 지자체의 우수사례 분석

- 2022년 국무조정실에서는 「2022년(2021년 실적)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본 평가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로, 청년정책의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제평가 형태로 실시하였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청년(평가위원의 1/3)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였음.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평가대상 및 평가과제의 성격에 따라 중앙부처는 종합평가 및 심층평가, 지자체는 우수과제 선발 등 크게 3부문으로 나누어 실시
- (중앙부처 종합평가) 32개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345개 청년정책 쏠 과제를 평가한 결과, 보통 등급이 가장 많았음

<중앙부처 종합평가 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개선권고	합계
과제수	41개	42개	158개	85개	19개	345개
비율	11.9%	12.2%	45.8%	24.6%	5.5%	100.0%

(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 6. 30)

- (중앙부처 심층평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청년 및 사업 담당자 대상 심층 면접을 통해 종합평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 개선방안 도출
- (지자체 우수사례) 청년정책 추진 독려를 위해 우수사례 5건 선정·공유
 - 17개 시·도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77개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하였고, 과제별로 청년의 참여·주도성(15%),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25%), 사업 추진 적극성(15%), 성과 달성도(45%) 정도를 평가함.

- 그 결과, 최우수 과제로는 경남 및 천안이 선정되었고, 우수 과제로는 서울, 세종 및 김제가 선정되었음.

최우수사례 2건		우수사례 3건	
광역	(경남)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광역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세종) 세종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조성
기초	(천안) 천안-아산 청년이 함께 꽃피우는 상생협력 교류	기초	(김제) 김제 청년공간 이다(E:DA) 운영

(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 6. 30)

□ 최우수사례

- (경남) 한 곳에, 한 눈에, 한 번에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구분	내용(참여·권리부분)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청년 니즈반영 - 청년 관련 일자리,주거,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지역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시간, 장소 불문하고 청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선제적 비대면 서비스 도입 이후 추진을 통한 원스톱 정책서비스 구현 						
사업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① 원스톱 시스템</th> <th>② 이용자 맞춤형</th> <th>③ 청년 참여형</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편 로그인 및 회원계정 통합 ② 온라인 사업신청 서비스 ③ 다양한 행정정보 연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통합 및 생애주기별 검색 ② 관심분야 사업 시행 알림 ③ SNS 등 게시물 공유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야별 상담 서비스 ② 청년사업 이용후기 ③ 청년생활정보 커뮤니티 </td> </tr> </tbody> </table>	① 원스톱 시스템	② 이용자 맞춤형	③ 청년 참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편 로그인 및 회원계정 통합 ② 온라인 사업신청 서비스 ③ 다양한 행정정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통합 및 생애주기별 검색 ② 관심분야 사업 시행 알림 ③ SNS 등 게시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야별 상담 서비스 ② 청년사업 이용후기 ③ 청년생활정보 커뮤니티
① 원스톱 시스템	② 이용자 맞춤형	③ 청년 참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편 로그인 및 회원계정 통합 ② 온라인 사업신청 서비스 ③ 다양한 행정정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통합 및 생애주기별 검색 ② 관심분야 사업 시행 알림 ③ SNS 등 게시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야별 상담 서비스 ② 청년사업 이용후기 ③ 청년생활정보 커뮤니티 					
성과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보 플랫폼(www.gyeongnam.go.kr/youth) 구축 운영 - 방문자 수 (일 평균 1,204명) / 방문자수 만족도 88% 						

○ (천안-아산) 천안-아산 청년이 함께 꽃피우는 상생 협력 교류

구분	내용(생활분야)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팬데믹으로 지역 문화예술분야의 위축에 따른 청년예술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정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지역민에게 문화예술로 위로와 희망을 제공 · 생활군을 공유하는 인접 시군간 청년들이 마중물이 되어 행정과 사회 각 영역으로 확대되는 상생 및 협력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대회 개최 - 청년문화예술인의 인터뷰 및 공연(음악, 댄스 등) · 청년문화예술의 정책 제안.
성과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속 공연무대의 기회 축소에 따른 지역 청년예술인에게 다채롭고 열정적인 무대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기여 · 지역청년이 중심이 되어 인접 시간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소모적 경쟁 대신 지역화합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정책당사자인 청년이 주도적으로 제안, 기획, 실행의 과정을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 활성화

□ 우수사례

○ (서울) 청년취업 토탈 솔루션, 청년인생 설계학교

구분	내용(교육부분)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포기 및 청년층 취업 무경험자 지속증가, 청년 고용부진 고착화 - 청년층 취업 무경험자 : '08년(21만 명) 대비 '20년(32만 명) 1.5배 ↑ · 신기술분야 실무인재 부족,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시급 -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 전문인력 필요 - 서울지역, 연간 약 2~3천 명 SW산업기술인력 부족(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기술분야 교육기관의 교육비 고액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부담.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까지 캠퍼스 10개 조성 연간 2,000명 육성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교육 콘텐츠 제공 및 학습관리 지원 · 교육생 취업 지원-JOB 코디 운영 - 市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좋은 일자리 pool 구축
성과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183명 신청, 646명 지원 · 주체적 인생 경로 설정 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층의 자존감 향상 및 인적 역량 강화

○ (세종) 세종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조성

구분	내용(교육부분)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지역 청년들의 자립의식 강화로 자기계발, 여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확충 요구 지속 증가. - 센터 및 회관 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LH임대주택 상가를 무상임대(기관협조)하여 청년활동공간을 확대하고 청년수요를 반영한 공간 구성(카페,스포츠룸,스튜디오,스터디공간) · 분산된 청년유관기관 집적화로 청년 접근성 제고 ①청년센터 ②청년창업사관학교 ③ICT이노베이션스퀘어 ④웹툰캠퍼스 ⑤미래교육캠퍼스 · 청년지원 사업추진(5개분야 15개사업,499백만원) ①정책지원-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경진대회, 청정세종정책버스 ②활동지원-청년네트워킹,활동가 지원,세종아카이브,청년주간개최 ③성장지원-창업인네트워크, 면접사진촬영등 구직활동지원 ④청년종합상담소 운영 상담지원 ⑤세종청년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센터 활동보고회 등 · 청년특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427백만 원) - 취업진단 진로상담, 면접특강 등 구직코칭, 취업 실무교육과정 운영
성과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을 위한 개방형 혁신공간 조성으로 청년활동 지원 강화

○ (김제) 청년공간 이다(E:DA) 운영

구분	내용(일자리분야)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창업일자리 창출추진 · 사업화 지원, 전문.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등을 통한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필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창업지원사업 ‘아리(All-Re)’ 와 연계하여 청년공간 운영 · 청년대상 프로그램 3개 분야 13개 프로그램 운영

	①청년창업 인큐베이팅 - 실전창업교육, 1:1창업 코디네이팅 외 3개 ②취·창업 지원 - 인생설계, 취미형 원데이클래스 외 3개 ③소통 및 활동 활성화 - 청년동아리지원, 심리상담, 네트워킹지원
성과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가 육성 및 창업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기여 · 김제 청년 활동의 구심점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연계 지원을 통한 청년 소통강화 및 플랫폼으로 청년 삶의 질 제고

4 해외 주요국의 청년정책 및 제도현황 조사

1) 유럽의 청년정책

□ EU의 청년보장제도

-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과 니트(구직포기자) 증가에 따른 조세감소와 청년의 장기실업 및 니트화 예방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3년에 도입.
- (정책수단) 일자리 제공, 교육지속훈련, 견습과정 등 학교-직장으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EU회원국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추진 - 정책대상에 청년인 만큼 교육제도, 특히 견습생 등 도제교육에 초점을 맞춘 직업훈련과 학교와 직장 간의 공공고용서비스를 강조.
- (정책방향) 개별국가가 아닌 EU 차원의 노동시장 상황 파악과 청년들의 구직을 위한 국가 간 이동, 가이드라인 작성 등 거시적 측면은 EU가 담당하고 개별국가의 정책 성공사례를 평가 공유함.
- (재정) 청년 및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재원은 EU 차원에서 조성함, 유럽사회기금을 활용함.

구분	내용
내용	· 청년이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통상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
대상	· 25세 이하 청(소)년, 30세 미만 대졸자
목적	· 청년 실업 상태의 장기화 및 니트 상태로의 진입 예방
주요 과제	· 공공고용서비스가 고용주, 교육기관, 사회서비스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 형성 · 국가별로 다양한 집행방식 적용 가능 · 고용주들이 적극적인 참여유도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유럽주요국의 청년보장제도

1.1 영국의 청년정책

- (정책 기조) 사회정책 측면에서 실업부조와 고용지원을 연계한 보편적 고용-복지 정책으로 접근
- (방향) 니트²⁾등 장기실업자 대상으로 실업부조와 고용지원정책 연계
- (중점정책) 비경제활동인구 활성화를 목표로 구직자 수당을 청년 New Deal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프로그램 미 참가 시, 수당 지급 중지.

구분		내용
교육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 졸업 후 소득 기반 하에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 생활비대출 : 일반학생 대상, 학생거주 상황에 따라 금액 차등지원 · 생활비보조: 부모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공공부조 :청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반 구직수당 -자산조사 기반, 부부와 실패한 자영업자 포함(30%가 25세 미만) - 구직활동 미 충분 시, 종료 가능
고용 지원	고용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센터플러스(공공고용서비스) : 구직자 수동 및 청년뉴딜 업무담당 · 청년 New Deal정책 -6개월 이상 구직자 수당 수혜자는 의무적 참여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견습제 도입 -기업은 실무훈련비용을 견습제로 충당 -16~24세 미전업 청년 교육비는 전액 정부 부담.
주거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 시간제학생, 교육과정 미소속 35세 미만 원룸비 보조 · 주역주택수당 - 수입, 재산, 가족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21세 미만 교육과정 미소속 학생, 시간제 학생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료서비스(NHS) 전국민대상 무료의료 제공, 19세 이하 본인 부담금 면제 · 민간의료보험 : 고소득자 중심

2) 니트(NEET)란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으며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함.

1.2 프랑스의 청년정책

- (정책 기조) 사회정책 측면에서 청년문제를 접근하면서 니트와 니트이외 청년대상의 차별화된 실업부조-고용지원-기업 연계정책을 추진
- (방향) 니트 대상 청년수당-미션로컬-미래고용계약, 청년실업자-통합고용센터-세대계약 등 2분화 된 정책을 추진
- (중점정책) 고용지원과 실업부조 이외에 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정책에 초점, 특히 학자금 및 의료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추세임.

구분	내용	
교육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 저소득층, 28세 미만 학생 · 학자금 : 무이자, 정부가 대출금의 최대 70%까지 보증 · 긴급지원 국가기금 : 청년구호기금 	
공공부조 :청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로카시오(청년수당, 만18~25세) : 니트 대상 매월 지급 · 활동연대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조사급여와 근로연계급여 결합(취업 후 최저소득미만 수혜) - 원칙적으로 만 25세 이상 청년대상으로 국민연대기금에서 지원 ·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 	
고용 지원	고용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용지원센터 없음 · Mission Locale을 통한 청년취업 지원 · 통합고용센터를 통한 청년취업 지원(고용알선 및 상담) · 직업 교육 및 훈련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연대 고용계약, 미래고용계약 등 · 수습직원, 직업훈련생, 인턴사원 고용 시 기업지원
주거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적 주거수당 : 임대료와 가족구성에 따라 월세 지원 · 사회주택수당 : 시설에 따라 임대료 또는 월세 지원 · 대안적 주거 활성화 : 청년과 독거노인 함께 거주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기업주 부담의 국가 의료보험과 개인보험(보충)운영 · 학생의료보험 가입 : 만28세 미만까지 의무화 	

1.3 독일의 청년정책

- (정책 기초) 고용지원-공공부조-기업 연계에 교육이 연계된 통합적 사회정책으로 청년 문제에 접근
- (방향) 취업준비 대학생과 청년실업자 대상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업부조하에 교육-고용지원-기업연계를 추진
- (중점 정책) 교육정책에서 대학생 취업 진로 과정을 학점과 연계하고 고등학교의 Dual System이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과 연계 운영.
또한 실업부조 신청자에게 적극적인 구직과 배정된 고용프로그램 적용

구분		내용
교육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등록금 : 무상교육 · 생활비지원 : 일반학생 및 마이스터 교육참가자 대상의 바팩³⁾
공공부조 :청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고졸은 18세, 대학제학 시, 25세까지 지급 · 보험기반 실업급여:단시간 근로 등 근로활동 시 지급 · 수직자 대상 실업부조 : 원칙적으로 학생배제,휴학생 예외조항 有
고용 지원	고용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연방고용청이 대학커리어서비스센터 운영,졸업학점과 연계 · 청년실업자: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부조 및 근로취업프로그램 제공 · 고졸:직업훈련제도 참가 시 직업훈련 수당제공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법에 의한 사용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생 훈련시 훈련비,사회보험료등 지원 · 채용장려금에 의한 사용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실업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채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50% 지원
주거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세 대학생 : 주거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 조항 · 니트 및 실업자: 구직자대상 실업부조에서 주거비,난방비 별도지급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 25세까지의 부모의 건강보험 적용

3) 고교 완전지원, 일반, 전문대생은 1/2 무상지원, 기타1/2는 무이자대출, 졸업 후 취업준비생에게 유이자로 최대 12개월 지원

1.4 기타 EU 국가들의 청년정책

국가명	주요내용
핀란드	<p>(주요정책) 2005년 Social Guarantee제도를 2013년 청년보장제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실업자 등록 시 3개월 이내 일자리 제공, 시보일, 학업, 워크숍 또는 재활교육 보장 <p>(정책수단) 교육보장, 스킬프로그램, 고용 및 경제력 개발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재활서비스, 워크숍 활동기회 부여 등 개별화서비스</p> <p>(직업교육기회확대) 연령별 학습장소를 지역에 재배치, 직업교육 및 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도제 교육 제공기업에 훈련보상금 지급</p> <p>(공공고용서비스) 청년대상 진로 상담기회 확대, Chance Card를 통해 고용주들로부터 월 670유로의 임금보조금 지급, 청년이민자를 위한 언어교육, 직업훈련, 상담제공</p> <p>(청년고용네트워크강화) 민간-공공-당사자 파트너십 모델구축, 국가 교육위원회, 지방정부연합회, 노조, 경영자연합회, 노동시장 및 청년관련조직 등이 참여한 실무진구성</p>
벨기에	<p>(주요정책)플랜더스 지방에서 작업장별로 융통성이 있는 직장내 훈련 제도(BO)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6개월 · 취업연계 : BO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는 훈련기간 종료 후 훈련기간 만큼 고용계약 또는 영구 취업계약 체결 · 공공고용서비스 : BO제도 홍보와 BO제도에 적합한 지원자 모집 · 고용주 : 훈련생에게 임금과 실업수당간의 차이 금액 보너스 지급
노르웨이	<p>(주요정책)실직청년에게 사회보장 혜택, 주택, 가족, 건강, 훈련, 고용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등 취약계층 청년에게 일대일의 정기적인 개별화 서비스 ·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
폴란드	<p>(주요정책) 바우처 및 임금보조금 지급을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인턴쉽, 직업훈련과정, 졸업후 교육, 진로상담에 사용 · (임금보조금) 민간부분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Intervention Works 제도로 임금보조금 지원
오스트리아	<p>(주요정책)청년여성, 직장적용 어려운자등 개별화 고용지원서비스 중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나 ‘딸의 날’ 프로젝트) 여학생들의 산업현장 방문, 직업과 고용기회 인식, 기술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유도 · (공공취업알선 프로그램) 구인과 구인에 필요한 훈련 및 취업서비스 기관과 회사가 공동부담하여 필요한 인재채용 · (job Coaching) 개인별 맞춤지도 제공, 직장 초기 지원들 통해 장애 및 학습장애를 가진 청년지원
	<p>(아일랜드) Job Bridgr제도를 통해 78일 이상 복지급여를 받은 청년에게 6~9개월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참여자에게는 복지급여 외 추가수당제공</p> <p>(스코틀랜드) 여러 제3섹터기관들에서 고등 또는 기초 자격을 가진 청년들에게 6~9개월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원봉사기관연합 커뮤니티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p> <p>(덴마크) 노조와 고용기금이 공공과 민간기업의 고용주와 협력하여 학교 졸업 젊은이들에게 견습생제도를 마련. 실습, 전문화 기회제공</p>

2) 일본 청년정책

- (정책 기초) 대학생은 대학 커리어 서비스 센터, 프리터에게는 잡 센터, 니트에게는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정책으로 접근
- (중점 정책) 고용알선 및 훈련 고용기업의 지원 등 고용정책 측면이 강한 가운데, 전 대상의 청년이 아닌 니트와 프리터⁴⁾ 중심의 정책을 추진.

구분		내용
교육 :대학생		· 학자금 : 자산조사 기반 대출제 운영 (시행:문부과학성 산하 일본 학생 지원기구)
공공부조 :청년대상		· 청년대상 별도 지원제도 없음.
고용 지원	고용 알선	· 대학재학생: 대학커리어 서비스센터 · 니트 :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청년자립스쿨 · 프리터 : 잡카페(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한 사업 · 트라이얼 고용지원 장려금 : 프리터의 정규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 장려금을 프리터와 기업에 지급
	기업 지원	· 청년고용촉진법 인증제도 · 청년응원선언기업 제도 · 3년 내 기졸업생 채용정착장려금
주거보조		· 주택 대부 : 해고, 장기 이직 대상의 취업안정자금 융자기금 운영 · 니트 : 청년자립스쿨, 청년자립기숙사로 취업 의지 고취 · 프리터를 위한 자유와 생존의 집
의료지원		· 청년대상 별도 지원제도 없음.

4)일본 내 버블경기 붕괴 후 15~34세 사람들 중 정규직업을 갖지 못했거나 실업자인 사람

3) 미국의 청년정책

- (정책 기초) 범부처 합동기구를 설립하여 여러 행정부처의 자원을 조율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약물 예방 및 소외계층에 있는 청년들의 인적 자원개발에 노력.
- (중점 정책) 니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 법 정비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사이에 예산의 조율을 통해서 지역 특성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음.
단순 지원보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 정책임.

구분		내용
교육 :대학생		· 장학금: 지역별, 학교별, 용도별 개인의 요구에 따라 많은 제도 有
공공부조 :청년대상		· 취약계층 상대 : 대상의 명확화와 범부처적으로 협력 강조됨.
고용 지원	고용 알선	· 연방정부 지원사업 WIRED(Workforce Innov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지역인적자원개발 혁신사업)지속 시행 - 지역 특색산업과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 지역관계기관(교육 및 훈련기관, 산업계, 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한 고용의 기회 확대.
	기업 지원	· WIRED를 통한 지역기업-학교연계를 통해 고용, 훈련비 지급.
주거보조		· 주택대부 : 지방정부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저리 할부금 지원
의료지원		· 청년대상 별도 지원제도 없음.

- 지역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진학이나 취업, 창업 등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결혼하며 행복하게 사는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음.
- 이에 일자리, 창업 위주의 정책이 집중되는 양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구 역시 예외가 아님. 해외 국가들은 우리의 지방정부보다 폭넓은 정책을 운용하고, 자체적인 노동시장 분석이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을 제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청년층 노동인구가 감소하자 청년고용촉진법을 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술혁신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EU의 청년 보장정책은 포괄적으로 청년층의 상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함.
- 국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일회성, 단기성 정책에 그침. 관련 기관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절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함.
- 해외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자립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정책과 법률이 선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이 과정에는 누구보다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이 대목에서 북구의 정책적 아쉬움이 큼. 청년정책이 정부, 지자체, 민간,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의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함.

III. 「청년 기본법」 과 자치법규 비교분석

1 「청년기본법」 제정 연혁

1) 「청년기본법」 연혁

- (추진 상황) 2016년 발의된 청년 관련 법안은 당초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책 마련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위원회가 조정됨.⁵⁾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인 2018년 5월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을 책임법률로 지정, 당시 계류 중인 6개 청년 관련 기본법안의 종합적인 대안으로 정함.
- (입법 취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5) 2019.6.28.여성가족위원회 반송의결, 2019.7.29. 정무위원회 회부

<청년 관련 기본법안 심의 내용>

법률명	제안자	제출일자	여성가족위원회 심의 경과		
			상 정	소위원회	특이사항
청년정책 기본법안	박홍근 의원	2016.08.17.	2016.11.17.	2016.11.17.	●2019.06.28. 반송
청년기본법안	이원욱 의원	2016.08.24.	2016.11.17.	2016.11.17.	●2019.06.28. 반송
청년발전 기본법안	김해영 의원	2016.12.02.	-	2017.02.21. (소위직회부)	●2019.06.28. 반송
청년기본법안	채이배 의원	2018.02.19	2018.09.19	2019.09.24	●2019.009.24. 회송 ●2019.11.25. 대안반영폐기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 의원	2018.04.25.	-	-	●2018.05.01. 1차 반송 ●2018.05.04. 운영위에 소관상임위 결정 협의요청 ●2018.08.30. 운영위에서 여가위로 소관위원회 결정 ●2019.06.28. 2차 반송
청년기본법안	이명수 의원	2018.05.21.	-	2019.03.29. (소위직회부)	●2018.05.29. 운영위에 소관상임위 결정 협의요청 ●2018.08.30. 운영위에서 여가위로 소관위원회 결정 ●2019.06.28. 반송
청년발전 지원법안	신보라 의원	2018.11.30.	-	2019.03.29. (소위직회부)	●2019.06.28. 반송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주된 구직 연령인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4.1%)의 2배가 넘는 9.8%에 달하며, 30~34세 실업률 역시 전체 실업률을 상회하는 4.6% 수준으로 나타남.⁶⁾

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2019.7 연령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령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7
전체	15~64세	3.2	3.6	3.7	3.8	3.8	3.9	4.1
청년	15~29세	8.0	9.0	9.1	9.8	9.8	9.5	9.8
	30~34세	3.7	3.5	3.3	3.8	4.1	4.4	4.6

-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⁷⁾는 대부분 전세·월세 등 임차가구(75.9%)로 거주하고 있으며, 9.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2.4%가 지하·반지하·옥탑에 거주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2018년 청년가구 주거실태>

구분	주거안정성				주거수준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최저주거미달가구	지하·옥탑	1인당면적
청년	18.9%	24.3%	51.7%	5.2%	9.4%	2.4%	27.3㎡
일반	57.7%	15.2%	23.1%	4.0%	5.7%	1.9%	31.7㎡

- (제정 기대효과)로 청년정책 추진의 기본이념, 방향, 기준 등의 제시를 통해 청년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청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7)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가구

2) 청년의 범위와 정의

- (청년의 정의)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정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청년기본법」시행 이전에는 청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통일된 정의가 없었으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내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였음,
- 입법 취지에 따라 청년의 연령이 다양하게 규정됨.

<국내 법령 및 정책상 청년의 범위>

법령/정책		연령	법령/정책	연령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 ~ 29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조세 특례 제한법	청년상시근로자	
	시행령	원칙: 15세 ~ 29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15세 ~ 34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	19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 ~ 34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청년창업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법령/정책		연령	법령/정책		연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근로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청년실업자)		15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자료 :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 2019. 9)

-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청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충북·경북이 15세~39세로 청년의 범위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으며, 경남·제주도 19세~34세로 가장 좁게 정하고 있음. 또한, 고령화가 심각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청년의 범위를 49세 또는 더 넓은 범위까지 정한 경우도 있음.⁸⁾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청년의 범위>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서울	15세~34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강원	18세~34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부산	18세~34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충북	15세~39세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대구	19세~39세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충남	18세~34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인천	19세~39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북	18세~39세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광주	19세~39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전남	18세~39세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대전	19세~39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경북	15세~39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울산	15세~34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경남	19세~34세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세종	15세~34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	제주	19세~34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	15세~34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8)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북도 단양군 19세~49세, 전라북도 순창 18~49세

2 「청년기본법」 주요내용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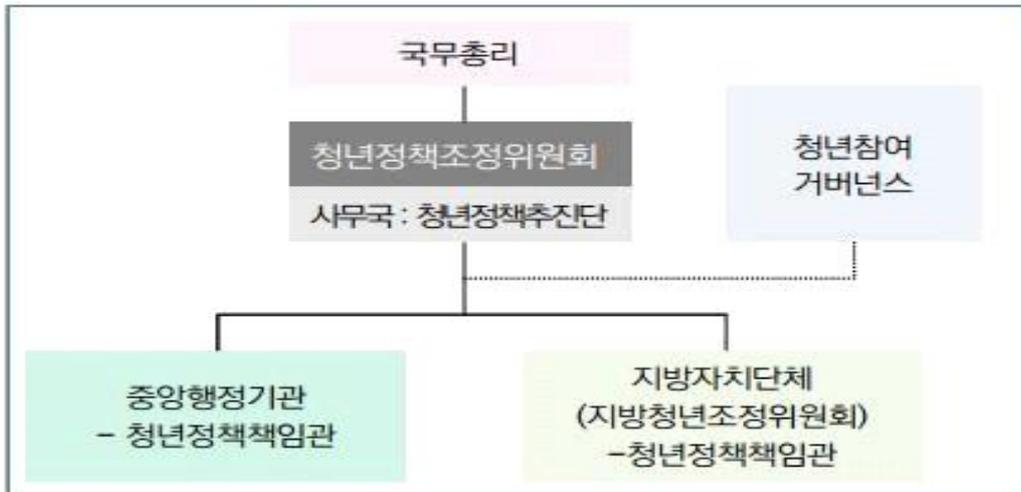
1) 「청년기본법」의 주요내용

- 현행 「청년기본법」은 제5장 28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총칙,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 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 문화활동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2) 「청년기본법」의 추진체계

청년기본법 [법률 제18433호 2021.8.17.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01호, 2022.9.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청년의 날)	제2조(청년의 날)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제7조(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청년 실태조사)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6조(전문위원회)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제20조의2(청년인재의 자격 등) 제20조의3(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제20조의4(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등)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용)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6조(포상) 제27조(국회 보고) 제2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포상)

- (추진체계) 「청년기본법」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청년정책 지원 문제는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 한 개 부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간의 상호 연계 및 협업 등이 필요하므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체계가 마련되었음.



※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 스스로 삶을 바꿀 계기 마련』, 보도자료, 2020.1.9., 재구성.

- (중앙정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 (지방정부) 광역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단위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함.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청년정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함.
- (기본계획)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

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들이 포함되고, 주요 시책과 자원 조달 방법이 분야별로 담겨야 함.

<「청년기본법」상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 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방법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본계획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함.
- 청년정책은 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되면서 중장기적 정책 목표와 연도별 사업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됨.

3 주요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개정사항 분석

1) 광역단체 청년기본조례 현황

□ 광역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

광역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자	최종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2015.1.2	2022.10.1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17.5.31	2022.4.1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15.12.30	2022.10.1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18.2.26	2022.1.1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2015.12.28	2021.2.2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16.10.20	2022.6.2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17.4.17	2022.3.1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2016.12.20	2021.12.20
경기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2016.1.1	2022.1.6
강원도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2017.11.3	2020.3.6
충청북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2016.5.24	2021.7.1
충청남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2016.2.22	2020.12.30
전라북도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2017.4.14	2022.10.21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2015.7.23	2022.5.19
경상북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2017.12.28	2021.11.1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2016.12.10	2021.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2016.9.23	2020.8.12

- (청년기본법) 2020년 8월 5일 시행⁹⁾ 이후 광역단체는 그 이전에 시행해 오던 단체별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모법이 되는 청년기본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수정 보완함.

9) 2020.2.4. 제정 공포 이후 6개월 후 시행.

□ 주요 광역단체 청년기본조례 비교현황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¹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¹¹⁾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¹²⁾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19세이상 34세이하	제3조(용어의정의) 19세이상 39세이하	제3조(정의) 18세이상 34세이하	제2조(정의)19세이상 39세이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청년의날)			제18조(청년의날)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등			
제8조(청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1조(청년 실태조사)			
제12조(청년정책 연구 사업)	제8조(청년정책의 연구)	제8조(청년정책의 연구)	제7조(청년정책의 연구)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지방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확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0조의2(청년의 참여확대)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제8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의 향상)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제11조(청년의 고용확대)	제13조(청년 권익증진 시책)
제18조(청년창업지원)			①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질향상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¹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¹¹⁾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¹²⁾
제19조(청년능력개발 지원)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제10조3(청년의 역량개발 등 지역인재양성)	②청년창업지원 ③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의주거지원)	제13조(청년의주거안정)	제17조2(청년의 주거안정지원)	④청년 주거지원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제17조3(청년의 건강증진 지원)	⑤청년 복지증진 ⑥청년금융생활지원
제22조(청년금융생활지원)	제14조(청년금융생활지원등)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지원)	⑦청년문화활동지원
제23조(청년문화활동 지원)	제16조(청년문화의 활성화)	제15조(청년문화사업)	⑧청년 국제협력지원
제24조(청년국제협력지원)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⑨청년정책과정에서 청년참여확대 ⑩청년사회진입 촉진지원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위임·위탁)		제20조4(사무의위임) 제21조(사무의위탁)	
제26조(포상)	제24조(표창)	제22조(포상)	제20조(포상)
제27조(국회보고)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2(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청년공간의 지원)
	제22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20조의3(사회공헌 협력의 체결등)	제1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등)
	제23조(청년단체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지원)	제20조(청년단체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청년단체등의 지원)
		제20조의2(기금의 설치)	

10)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는 2015.1.2. 제정되어 총 16차례 개정되었고, 「청년기본법」시행 이후 예산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2차례 개정됨.
11)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는 2017.5.31. 제정되어 총 8차례 개정되었고 「청년기본법」시행 이후 2021.7.14. 「청년기본법」에 따르고자 개정됨.
12)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는 2015.12.30. 제정되어 총 9차례 개전되었고 「청년기본법」시행 이후 2020.8.5. 「청년기본법」에 따르고자 개정됨.

2)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사항

- (청년 정의) 서울시의회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가 당초 서울시 조례에서는 모호하게 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9월 개정을 통해 ‘청년’의 범위를 “19~39세”로 명확화하였음.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 서울시가 청년의 범위를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34세”를 따르지 않고, “19~39세”로 정의한 것은 「청년기본법」의 단서조항으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임.
-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청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통일된 정의가 미진했던 실정이며, 여전히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의 내용 등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규정 및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임.

<국내 법령 및 정책 상 청년의 범위>

법령/정책		연령	법령/정책	연령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29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원칙: 15세~29세	조세 특례 제한법	청년상시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15세~34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	19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청년창업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근로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청년상시근로자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고용보험법 시행령 (청년실업자)		15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자료 :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 2019. 9)

- 특히, 청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게 되면 구성원 간의 동질성이 저하되어 정책별 효과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다수의 청년정책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 청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청년정책조정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조례로 위임하고, 청년 위촉 비율을 전체 위원 1/2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 추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p>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한다.</p> <p>1. ~ 4.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p> <p>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u>지방청</u></p>	<p>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p>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p> <p>2. <u>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u></p>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년정책조정위원회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3)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사항

- (목적)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의 경우, 제1조 목적 조항에 「청년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목적 조항을 차용하면서 구체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함.

<부산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1조(목적)</p> <p>1. 이 조례는 <u>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p> <p>1. 이 조례는 「<u>청년기본법</u>」에 따른 청년정책을 <u>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p> <p>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정의)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3조(정의)생략</p> <p>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u>다만,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도 청년으로 볼 수 있다.</u></p> <p>2·3. (생략)</p>	<p>1. ----- ----- -----<u>.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u></p> <p>2·3. (현행과 같음)</p>	<p>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 안 제3조(정의)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단서조항을 개정함.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¹³⁾의 단서를 조례에 준용함으로써, 청년의 범위를 축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함.

○ (책무) 부산광역시 「청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위임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의 의무조항으로 대체하였음.

*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정책 수립과정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 보장, 공정한 기회 보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자원 확보, 교육·홍보 등

1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4조(책무)</p> <p>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마련하고 <u>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보장과 그 의사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책무)</p> <p>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u>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u></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u></p>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의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중 “청년의 건강증진”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는데, 이는 그간 부산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보임.

* 부산광역시의 경우, “직무 및 취업(학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필요” 청년 마음 건강 증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기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p> <p>가. ~ 바. (생략)</p> <p><u><신설></u></p>	<p>② ----- ----- ---</p> <p>2. ----- ---</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u>사. 청년의 건강증진</u></p>	<p>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p>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제6조제2항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지역정책조정위원회 설립)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u>부산광역시청년위원회</u>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 ----- ----- <u>부산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u> -----.</p>	<p>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p>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p>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수 있고, 분석·평가 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주요 개정사항은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청년위원회”를 “부산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 제13조에서 명시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9조(청년위원회)</p> <p>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① -----</p>	<p>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p>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년위원회
(이하 “청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생략)
② 청년위원회는 위원
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
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부산광역시청년정
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 ----- 수립 및
변경-----
3. -----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

속으로 청년정책조정
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
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
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
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
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
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③ 청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청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

④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

⑤ 청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청년위원회의 회의

⑤ 위원회 -----

----- . -----

-.

⑥ ----- 위원회 -----

----- .

⑧ 위원회-----

- 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

- 제9조의 제목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를 “부산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을 “수립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도별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로 함.
- 7항은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청년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12항 중 “청년위원회 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청년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함.

○ (청년의 참여확대)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10조의2(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청년 또는 청년단체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0조의2(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청년, 청년단체 또는 자발적 청년모임 활동</u> ----- -----.</p>	<p>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p>

		<p>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

- 제10조의2제3항 중 “청년 또는 청년단체” 를 “청년, 청년단체 또는

자발적 청년 모임 활동” 으로 함.

- (청년 고용 확대) 부산광역시의 “청년고용 확대” 조항은 「청년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11조(청년고용 확대 등) ①·② (생략)</p> <p><신설></p>	<p>제11조(청년고용 확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인력 양성, 청년 창업 육성·지원, 취업 역량 강화, 청년고용 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 (청년 문화사업) “청년 문화활동 지원” 과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조례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15조(청년문화사업) (생략) <신설>	제15조(청년문화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시장은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는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대해 자산 형성, 신용 회복 교육 및 상담, 청년 부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① (생략) ② <u>시장은 채무 부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u>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청년의 자산형성 및 신용 회복을 위</u>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p><u>청년에게 자산을 형성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한 금융 교육과 상담-----</u></p> <p>-----</p> <p>-----</p> <p>-----</p> <p>-----</p> <p>-----.</p> <p><u>③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	--

-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청년기본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청년 주거지원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지원, 주택임차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차임의 보조, 보증료 지원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개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청년기본법
<p>제17조의2(청년의 주거안정 지원)</p> <p>① <u>시장은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지원, 주택 임차를 위한 금융 지원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u></p>	<p>제17조의2(청년의 주거안정 지원)</p> <p>① <u>시장은 -----</u></p> <p>-----</p> <p>-----</p> <p>-----</p>	<p>제20조(청년 주거지원)</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보증료 지원 등의 대책---</p>
-------------------------------------	---

- (사무의 위탁) 「청년기본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기존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법인·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함.

현 행	개 정 안	청년기본법
<p>제21조(사무의 위탁)</p> <p>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u>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u>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u>」를 따른다.</p>	<p>제21조(사무의 위탁)</p> <p>① ----- ----- ----- --- <u>법인·단체 등</u> --- ----- --.</p> <p>② ----- ----- ----- ----- 「<u>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u>」 및 「<u>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u>」---</p>	<p>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p> <p>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4) 대구광역시 조례 전부 개정사항

- (청년 정의) 대구광역시는 청년의 범위를 기존에 “19~39세” 를 유지하였으며, 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청년단체, 청년공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서울, 부산과 달리 조례에 「청년기본법」의 단서 조항을 준용하지 않음.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2조(정의) ① (생략)</p> <p>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3. “청년공간”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p>	<p>제2조(정의)</p> <p>1. “<u>청년</u>”이란 <u>19세 이상 39세 이하인</u> 사람을 말한다.</p> <p>2. “<u>청년단체</u>”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3. “<u>청년공간</u>”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p>	<p>제3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청년</u>”이란 <u>19세 이상 34세 이하인</u> 사람을 말한다. 다만, <u>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u></p> <p>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p>

<p>설을 말한다.</p> <p>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p>	<p>설을 말한다.</p> <p>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p>	<p>3. “청년지원”이란 청년 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p> <p>4. “청년정책”이란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p>
--	---	---

-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는 「청년기본법」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한 것으로, 청년 발전과 참여 및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 확보 및 홍보·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임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p> <p>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청년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u>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

	⑤ 시장은 <u>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u>	체는 <u>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u>
--	---	--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청년기본법」에서는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준용하여 대구광역시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청년기본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u>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시장은 <u>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심의 위원회에 매년 보고</u>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u>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u>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u>포함되어야 한다.</u> 1. <u>청년정책의 기본방향</u> 2. <u>청년정책의 추진목표</u> 3. <u>청년정책에 관한</u>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u>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u>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u>포함되어야 한다.</u> 1. <u>청년정책의 기본방향</u> 2. <u>청년정책의 추진목표</u> 3. <u>청년정책에 관한</u>

<p><u>하여야 한다.</u></p>	<p><u>분야별 주요 시책</u></p> <p><u>4.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시책</u></p> <p><u>5.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u></p> <p><u>6.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u></p> <p><u>7.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u></p> <p><u>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분야별 주요 시책</u></p> <p><u>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u></p> <p><u>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u></p> <p><u>6. 청년정책 취지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u></p> <p><u>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광역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p>
-----------------------	--	---

<청년기본법 상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조항>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청년정책 심의위원회) 청년기본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는 청년정책책임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령
제8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 생략	제8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 시장은 <u>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을 지정</u> 한다.	法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u>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施行令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에게만 해당한다.

1.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해당 기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4.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5. 청년정책과 해당 기관의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
--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청년기본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1/2 이상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개정된 것임.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p>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와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시장 - 부위원장 : 위촉 위원 중 호선 - 간사 : 청년정책업무 담당 과장 - 당연직 : 일자리투자국장, 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재창조국장 - 위촉직 : 청년을 2분의 1이상 포함 2. 임기 : 2년, 한 차례 연임 3.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정기회의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 개최

- (청년 권익증진) 대구광역시는 청년기본법에 담은 “청년의 권익증진 조항을 준용하였으며, 이는 청년 기본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상위법과 조례안 비교>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1.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2. 청년창업지원 3. 청년 능력개발 지원 4. 청년 주거지원 5. 청년 복지증진 6. 청년 금융생활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청년 국제협력 지원 9. 청년정책과정에서 청년참여 확대 10. 청년 사회진입 촉진 지원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 주요 기초단체 청년기본조례 비교현황

청년기본법	천안시 ¹⁴⁾	전북 김제시 ¹⁵⁾	대구광역시 북구 ¹⁶⁾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19세이상 34세이하	제3조(정의)18세이상 39세이하	제3조(정의)18세이상 39세이하	제3조(정의) 19세이상 39세이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7조(청년의날)	제6조2(청년의 날)		
제8조(청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제6조(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1조(청년 실태조사)			
제12조(청년정책 연구 사업)	제8조(청년정책의 연구)	제8조(청년연구등)	제8조(청년정책의 연구)
제13조(청년정책조정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회회의) 제14조(간사) 제16조(분과위원회) 제17조(위원회제적)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회 운영)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제10조(위원의해촉)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
제14조(지방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확대)	제19조(청년의 정책참여확대)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의 향상)	제21조(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사항)	제18조(청년정책사업추진) ①청년활동지원 및 참여확대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등)
제18조(청년창업지원)		②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	

청년기본법	천안시 ¹⁴⁾	전북 김제시 ¹⁵⁾	대구광역시 북구 ¹⁶⁾
제19조(청년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의 능력개발)	리·창업지원사업	제14조(청년의 능력등의 개발)
제20조(청년의주거지원)	제22조(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③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제16조(청년의 주거안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제24조(청년의 권리보호)	④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으 위한 사업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제22조(청년금융생활지원)	제25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⑤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제23조(청년문화활동 지원)	제26조(청년의 부채경감)	⑥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제17조(청년문화예술활성화)
제24조(청년국제협력지원)	제23조(청년문화활동의 활성화 및 공간마련)	⑦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5조(권한의위임·위탁)		⑧그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	
제26조(포상)	제14조(수당등) 제30조의2(포상)	제17조(수당등)	제23조(포상)
제27조(국회보고)			
	제18조(청년정책네트워크)	제16조(청년공감서포터즈구성)	
	제27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8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제29조(청년단체등에 대한지원)		제22조(청년단체등에 대한지원)
	제3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14) 천안시 청년기본조례는 2015.1.2. 제정되어 총 7차례 개정되었고, 「청년기본법」시행 이후 3차례 개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함.

15) 김제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기본법」제정 이후 2020.6.8.제정됨.

16)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2019.9.20. 제정 이후 개정 내역이 없음.

- ① 2022년 6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초단체(천안시, 김제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 조례와 비교 분석.
 - 두 기초단체의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정한 청년의 정의(19~39세)보다 넓은 범위(18~39세)로 정책의 대상 폭이 넓음.
- ② 두 기초단체 모두 「청년기본법」의 제정 이후 개정이 되었지만 맞춤형 정책·제도·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는 ‘실태조사’ 조항이 규정되지 않음.
- ③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개정된 사항이 없지만 타 기초단체와 현행 조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법률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④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기본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제도, 지원대책을 합리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4 주요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비교 시사점

앞서 서술한 비교 분석에서 밝혔듯이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의 청년기본조례를 살펴본 결과,

「청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청년정책을 평가받아야 하는 광역단체들은 법 제정 이후 대부분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비교한 결과, 서울과 부산은 일부개정, 대구는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음.

서울의 경우는 청년의 범위를 “19~39세”로 명확화하고, 기존의 “청년정책위원회”를 법에 맞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위원의 청년 비율을 “1/2”로 개정하는 등 최소한의 개정만 한 것으로 판단됨.

부산의 경우는 “목적” 조항에 「청년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목적 조항을 차용하였으며, 법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위임사항의 의무적 이행, 청년위원회 명칭 변경, 법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였다는 특징임.

대구와 부산의 경우는 전부 개정으로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법에서 정하고 위임하고 있는 청년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심의 기능, 위원회 구성 등 가장 많은 부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3개 광역단체, 2021년 우수 기초단체 등의 조례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조례 내용 및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자 함.

1)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 부재

-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단 3곳임.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 맞춤형 정책이 수립 가능하고 예산적 측면에서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으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됨.

2)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규정의 미흡

-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단 3곳임.
- 책임 있는 담당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정책 실행의 구심점 부재로 인한 실행력 감소로 정책 시행의 효율성 부재. 또한 책임감이 없는 정책집행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3)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청년조례의 연계성 미흡

IV.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도출 및 과제

1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도출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들</u>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년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에 따라 <u>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들이</u>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대구, 부산 등과 같이 「청년기본법」을 따르도록 개정</p>
<p>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현행과 같음)</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19세</p>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19세</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u>청년고용촉진 특별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2. “청년정책”이란 <u>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u></p> <p>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p> <p>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p>	<p>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u>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u></p> <p>2. “청년정책”이란 <u>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위에 대한 단서조항 준용</p> <p>청년정책 용어 정의를 「청년기본법」을 차용한 것임.</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6. <u>"청년발전"이란 법 제3조 2호에서 정하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u></p> <p>7. <u>"청년지원"이란 법 제3조3호에서 정한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u></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청년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을 준용함.</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② 구청장은 <u>청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청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u></p> <p><신설></p>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p> <p>①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p>	<p>② 구청장은 <u>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③ 구청장은 <u>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p> <p>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u>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u></p> <p>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u>기본계획</u>)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바. 청년의 권익향상 및 건강증진 사. 그 밖에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u>기본계획 수립</u>)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청년기본법과의 용어통일</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3.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p> <p>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p> <p>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p> <p>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u>기초조사</u>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u>청년정책</u>에 관</p>	<p>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7조(청년의 날) (현행과 같음)</p> <p>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u>실태조사</u>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u>법 14조</u></p>	<p>「청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로 용어 변경 필요</p> <p>「청년기본법」과의 용어통일</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한 주요 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u>청년정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p>	<p><u>에 따라 청년정책에</u> 관한 주요 사항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p>	<p>「청년기본법령」에서 정한 위원 비율</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청년·일자리·복지·주거·고용·문화예술·교육·건강 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u>7인</u>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p> <p>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p>	<p>청년·일자리·복지·주거·고용·문화예술·교육·건강 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u>2분의 1이상이상</u> 포함하여야 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⑥~⑨ (현행과 같음)</p>	<p>과 통일</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0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위원회 회의) (현행과 같음)</p>	
<p>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p> <p>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p>	<p>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p> <p>① 구청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u>구의</u> 각종 위원회와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u>법 제15조에 따라 구의</u> 각종 위원회와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청년기본법령」을 따르도록 함.</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u>청년의 능력과 역량개발 등을 위해 노력</u>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p>	<p>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u>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u>하여야 한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현행과 같음)</p>	<p>「청년기본법」 명시한 내용으로 변경 필요</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청년인력 양성, 청년 창업 육성·지원, 취업 역량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청년의 주거안정)</p> <p>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7조(청년 문화예술 활성화)</p> <p>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청년의 주거안정) (현행과 같음)</p> <p>제17조(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p> <p>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현행과 같음)</p>	
<p>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p> <p>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현행과 같음)</p>	
<p>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p> <p>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한</p>	<p>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중앙 또는 대구시 등의 청년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복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현행과 같음)</p> <p><u>제22조(청년의 날)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u></p>	<p>「청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날 도입 근거 마련</p>

현행	개정 의견	참고의견
<p>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신설></p> <p>제2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 및 제안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p> <p>제24조(수당 등)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p> <p>제25조(포상) (현행과 같음)</p> <p>제2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조번호 변경</p> <p>대구 등 조례로 회의 등 수당 규정</p> <p>조번호 변경</p> <p>조번호 변경</p>

2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향후 과제 도출

(1) 청년정책 제언

- (실태조사)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집행, 생활밀착형·통합형·연계형 청년 지원체계 구축 필요. 지역 생활권을 기반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 접근성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 반드시 실시.
 - 북구 거주 청년대상 경제활동상태 판별, 현재 일자리, 구직 활동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대한 잠재실업 관련 내용,
 - 첫 일자리 이행에 관한 실태, 경험 일자리, 학교생활, 졸업 후 진학 경험, 재학 중 경험 일자리, 어학연수 경험 및 외국어 시험, 졸업전 취업목표,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 취득 자격증, 시험준비, 취업준비 및 기타 사항, 청년고용대책, 신체 및 정신건강, 인적사항, 소득 및 지출에 관한 내용.
- (청년전담부서 신설)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조례」에 기반하여 구청장 직속의 청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임명.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조례」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청년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청년공간 조성) 청년지원센터/창업지원센터 등 청년전용 공간을 조성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창업교육, 멘토링 등 청년전용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청년종합지원센터) 현재 육아·아동·청소년 각 성장 생애 주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지원기관은 있으나, 청년의 사회 정착·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기관은 부재. 청년지원 및 청년 활동의 통합적 플랫폼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구 산하 센터 개소.

부록 :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간 사	공동위원장	결 재

일 시	2021. 4. 27.(화) 10:00	장 소	북구청 4층 대회의실
참 석	- 위원 18명 전원 참석(당연직 6명, 위촉직 12명)		
안 건	-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회 의 내 용			
○○○	- 개회, 국민의례, 진행순서 안내		
○○○	【인사말씀】		
○○○	【위 촉 식】		
○○○	-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자기 소개와 다짐을 듣도록 하겠음.		
○○○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감사드립니다.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귀 기울여 듣고 함께하겠음		
○○○	- 대구청년센터 활동지원팀장임. 작년부터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고 국가 차원에서 시행이 시작되었음. 대구시는 2015년부터 청년정책을 펼쳐왔고 올해 70여 개 사업을 하고 있음. 북구의 경우 경북대가 혁신파크로 지정되는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잘 구성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인적 인프라는 더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앞으로 북구에서 청년정책이 잘 시행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본부 C-SEED 팀을 맡고 있음. 센터에서 창업 쪽 지원을 많이 하고 센터장님도 청년창업, 대학생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음. 센터에서 지원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진전문대 사회복지과 교수임. 북구 지역 청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대 컴퓨터학부 학생임. 원래 경산에 살다가 북구에 산 지 2년이 넘음. 좋은 점도 많지만, 일자리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못 미치는 거 같음. 그런 부분을 살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대 학생임.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음. 예비창업자들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부분을 맡고 있음. 청년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공단, 검단공단이 북구에 위치하고 있고 기업육성, 단기 일자리 사업 부분,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업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대 복현동하고 북문 쪽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음. 청년 관련해서 문화예술존사업, 청년창업 관련 가장 기본이 되는 창업 코워킹 공간을 만들고 있음.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청년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더욱 좋은 공간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듣겠음

○○○	- 청년들의 평생교육이나 청년정책위원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북구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대구대 행정학과 학생임. 나이로 27인데 북구에 산 지 20년이 됨. 청년이 떠나는 북구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북구가 되도록 청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로컬문화기획 조세상 대표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북구에 살고 있음. 나름대로 북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음. 다른 지자체나 기관을 보면 청년정책이란 이름 아래 청년이 배제된 경우가 많았음. 이번 북구는 청년들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 경북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이나, 문화예술 분야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진하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됨.
○○○	-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있음. 청년정책위원회가 화두인 만큼 청년정책위원회가 어떻게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지,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반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공부하려고 왔는데 제가 의견을 많이 내야 하는 자리 같음. 청년들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협동조합 소이랩 대표임. 도시재생과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 북구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3살부터 북구에서 살아온 토박이임. 대구시가 2016년부터 청년정책을 시작해 왔는데 항상 왜 내 동네에는 생기지 않는 걸까 아쉬웠음.

○○○	- 늦게나마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생기고 열심히 정책을 펼쳐나가려는 모습에 기대가 많이 되고 청년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많이 있어서 기대됨.
○○○	- 이런 자리가 생겨서 감회가 새롭고 뿌듯함. 주위에 청년들을 만나보면 참 힘들구나라를 느끼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함.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음.
○○○	- 다음으로 구청장님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가실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음.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추천받도록 하겠음
○○○	- ○○○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	- ○○○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청년정책관련 활동 경험이 풍부하셔서 공동위원장 잘하실 거 같음
○○○	- 추천 인원이 2명 이상임에 따라 위촉직 위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겠음
○○○	- 건의사항이 있음. 두 분이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위원회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상황. 두 분이 협의하셔서 한 분이 위원장, 다른 한 분은 부위원장 하셔도 괜찮을 거 같음
○○○	- ○○○ 위원장님이 남성이라서 여성 위원장님을 추천함
○○○	-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안경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 ○○○위원님이 ○○○위원님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	- 네, 두 분이 상의하셨으니까 동의함
○○○	- ○○○위원님은 요즘 젠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 의견이고, ○○○위원님께서는 그런 뜻을 받아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부위원장으로 역할 하시겠다고 양보하신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	- 좋습니다
○○○	- 그럼 동의하시면 박수로 결정하겠음. 【전원 박수】
○○○	- ○○○위원님이 신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됨. 공동위원장 자리로 이동 바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음.
○○○	-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음
○○○	- 자동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이 선출됨 【2020년 청정북소리 결과물 영상 시청】 - 청정북소리는 금년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에서 발간한 전국 청년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됨 【회의자료】 설명 - '20 ~ '21년도 청년정책 업무보고 - 청년 공간 예정지 소개 - 주민참여예산(청년참여형) 공모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말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번 주까지 임. 작년에 대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이 반영돼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가 신설됨. 분과위원 22명이 구성되었고 주민참여예산 180억 중에 10억이 청년참여형 예산으로 반영됨. 현재 100여 개 정도 제안됨. -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시면 향후에 좀 더 예산이 증액되고 청년참여가 더 유도되지 않을까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청정 북소리에서 제안한 정책 중에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이 2021년도에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있음. 제안한 정책이 10가지인데 이중에서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만 올해 추진되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에 취재분과, 연구분과에서 10가지 정책이 제안됨. 올해 추진하는 청년학교가 제안된 10개 중에 4가지 사업과 연관이 있음. 5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 4개의 사업만 추진되는 건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추후 제안된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위원회 자문도 하고 해서 향후 추진할 예정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는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보완을 해서 발전시킬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회의할 때는 스크린으로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학교 6월 시작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거 같은데 참여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대략 30명 정도 예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혹시 올해 복구에서 청년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인구청년정책팀이 신설된 지 얼마 안됐음. 대구시를 보면 청년정책과에서 과 단위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도 많으나 복구는 출범한 지 얼마 안돼서 청년동아리 사업, 청년소셜다이닝, 청년학교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예산은 4천 5백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사회참여나 교류 같은 직접적인 예산은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일자리 분야임. 좀 전에 말했다시피 계획상 도심융합특구에 500개 기업, 만 명 정도 일자리가 생기는데 6,500명을 청년일자리로 하려고 하니 앞으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 경북대학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코워킹 공간을 만들어 청년이 창업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예산도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음 - 우리 구청이 의도해서 만들지만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청년위원분들이 전문가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공무원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위험성이 있음.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런 전문기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야 도심융합특구도 그렇고 당초에 목적인 대로 갈 수 있음. 앞으로 기획실에서 그런 자료를 수합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년 예산이 참여하는 걸로 4천 5백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음.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내년엔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혜택과 지원이 청년에게 갈 수 있도록 당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여쭙본 것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 키우는 문제는 청년정책 위원회에서 볼륨이 나와야 됨. 그래야 예산을 반영함.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임. 지금까지 한 청년동아리 사업을 보면 커피 클래스에서 커피 만들고 아마추어 작가 모임에서 글 쓰고 하면 취미생활하고 좋으니 만족도 조사에서 당연히 좋다고 나올 것임. 공짜로 취미생활 하는 거니까. - 하지만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먼저인데 지금까지 한 사업으로 동아리 만들기를 보면 취미생활이나 복지 쪽에 맞춰서 있어 아쉬움. 확실히 구청장님 말씀처럼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많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예산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예산보다 10배 정도는 키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 주시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나요?

○○○	- 조례규정에 연 1회 정기회의를 가지도록 되어있음
○○○	- 지금 계획은 어떤지, 간담회라든가
○○○	- 앞으로 계획은 검토를 거쳐 고려해 보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 때문에 부담스럽겠지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좋겠음. - 공동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대구나 북구 청년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조차,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커뮤니티 구축하는 것도 없다고 느낌. - 애초에 북구에는 정주하기 힘들다, 일자리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희망도 없다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청년동아리 같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관심사를 가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일자리나, 북구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너무 결과론적으로 급하게 일자리 쪽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찬찬히 여기 계신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답에 북구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산업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단계를 밟았으면 함. - 대구 청년센터에서 처음에 동아리 사업 시작했을 때 이게 무슨 청년정책이나 공격을 많이 당함. 하지만 지금 꽃을 피우고 있고 저도 수혜자이기도 하고 좀 전에 청정북소리에 나왔던 멘토들이 모두 청년센터 동아리 사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말씀 감사함. 오늘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고마움. 구청에 형식만 갖춘 위원회가 많음. 근데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청년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주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음 - 구청의 해당 과에서도 참석을 했지만 해당 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걸러보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간 사	공동위원장	결 재

일 시	2021. 9. 16.(목) 15:00	장 소	북구청 4층 대회의실
참 석	• 위원 18명중 12명 참석(당연직 6명, 위촉직 6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회의 개최결과 • 2021년 청년정책추진현황 보고 • 2022년 청년정책 추진계획(안)보고 • 청정북소리 제안사항 설명 		
회 의 내 용			
○○○	- 개회, 국민의례, 진행순서 안내		
○○○	- 인사말씀		
○○○	- 북구 청년정책 보고(회의자료 및 PPT자료)		
○○○	- 청년정책 중 보완 또는 새로운 사업내용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주기 바람.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행정과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본 경험이 미흡하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니 보시고 얘기해 주기 바람		
○○○	- 청년공간조성에서 코워킹스페이스가 어떤 곳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워킹은 함께하는 오픈스페이스로 청년들이 같이 어울려 공간을 나눠가면서 작업한다. 코워킹공간은 창업경진대회를 거쳐서 지금 삼성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는 학교동아리,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하여 창업 방향을 잡아주는데 40팀 모집하여 기술지원과 보조를 해줌 - 청년리모델링공간은 올해 11월 완공목표이고 40팀 정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그 뒤 신축 공간도 2022년 연말 완공하면 30팀이 사용할 수 있고, 2023년에는 전체 70팀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워킹스페이스와 복잡소의 공유오피스 차이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오피스는 사용자가 공간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코워킹은 여러 가지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는 공간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이 다 지어지게 되면 공간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격3동 현장지원센터가 ING캠퍼스라는 법인이 하는데 청년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 따로 인력을 추가하지 않아도 됨.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는 거기서 운영하고 그 이후는 특정 업체에 위탁하든지 그렇게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공간 다 ING 캠퍼스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공간이 아니고 코워킹 리모델링과 신축 공간이라고 보면 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문화예술존, 어울림러닝센터, 복잡소가 건립 완공되면 운영비가 필요할 건데 그걸 충당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건물을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생력을 키워 주민 스스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교육을 하고 있음. 상생 카페 등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공동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 복잡소는 주민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을 운영해보면 초기에는 완전히 정착되고 정상화되는데 구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북구 청년축제가 확정된 거죠? 9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외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관련 채택된 사업이 더 있을까요?
○○○	- 없음
○○○	- 그게 2천만 원인가요?
○○○	- 네
○○○	-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 그 기간에 맞춰 축제를 진행해주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	- 참고로 하겠음
○○○	- 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 40팀 정도 선정하는데 실제 창업가들과 구분 없이 지원하는지? 추가 지원방안은 초기자금 지원계획에 입주된 팀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초기 창업가가 1년에서 3년 내 창업한 창업가들을 말하는지 아니면 처음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건지 궁금함
○○○	- 코워킹 리모델링 공간이나 신축 공간의 청년 창업가는 사업자 등록 안 된 초보자들로 법인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원할 예정임. 청년창업을 희망하고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함
○○○	- 입주하고 나서 마케팅 지원이나 행정지원을 받으려면 법인이나 사업자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 구체적인 계획은 시행하면서 현실에 맞게 진행하겠지만 지금 계획은 시제품을 만들려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어서 등록을 하고 지원할 예정임
○○○	- 코워킹공간은 최대한 3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우리 구하고 ING 캠퍼스하고 해서 정상화된 팀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데, 3년 정도 지나 1차로 나가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함. - 경북대혁신 캠퍼스가 올해 들어서고 경북도청 중심으로 해서 도시융합특구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인큐베이팅된 업체가 넘어와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서포팅해야겠지요

○○○	- 내년 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	-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산격동 사업은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되어 있음. 자체로 직접사업 하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가 총 290억 원으로 운영됨
○○○	- 그건 하드웨어 구성 예산으로 50:35:15이고, 소프트웨어 예산인 청년창업, 취업 관련 이런 예산은 구비로 편성됨
○○○	- 마중물사업 290억 원 중 우리가 15% 부담한다고요?
○○○	- 다른 구에서는 구비를 20% 부담하고 있음
○○○	-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국비 5, 시비 2.5 구비 2.5로 보면 됨. 이 사업은 국비 5, 시비 3.5, 구비 1.5로 구성됨
○○○	- 우리 구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침산1동, 복현동, 칠성동, 산격동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도 많이 되고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을 낮추었고 시비는 높였음
○○○	- 마중물 사업비가 290억 원인데 구비 15%하면 43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입니까?
○○○	- 네
○○○	- 지난번 4월 27일 회의할 때 올해 예산이 청년 쪽에 5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고, 구청장님께서 내년에는 10배로 해서 5억으로 올리자고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뉴딜 사업해서 4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뉴딜 사업까지 포함해서 물론 청년정책이 맞는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음. - 모든 사업들을 보면 기존 세대의 눈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됨. 그러다 보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사업 진행이 대부분임. 더군다나 요즘 청년들한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식으로 무임금의 노동을 하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탈피해서 청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까지 책정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보고 정책을 갖춰서 추진해줬으면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0억 원이 드는 복현동 일대 뉴딜사업은 청년을 포함하여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예산이고 이게 다 되면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됨. 그때는 안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하겠음. - 청년정책위원회도 앞으로 혁신 차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가끔 한 번씩 회의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오늘 열 분 중에 바빠서 다섯 분 못 나오셨는데 앞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회의실 룸을 만들고 거기서 날짜, 시간 정해서 회의를 활발히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음. - 어울림러닝센터에 4층 청년꿈드림지원센터는 복구의 청년센터라고 보면 되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성화 계획에 4층 청년꿈드림지원센터는 청년정책팀에서 운영할 예정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운영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로만 해결하는 정책은 계속 실패해왔음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추진해야 됨. - 지금 중심은 경대 중심으로 공간, 사업이 세팅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도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함. 칠곡에 보건대, 과학대 있는데 그쪽도 더 챙겨줬으면 좀 더 풍성해질 거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이 초기 단계이며 예전에는 청년공간을 생각하지도 못했음. 우선 복현동, 산격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간이 생기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워가는 방법으로 해볼 것임. -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어느 한 부분만 맞추기가 어려움. 우선 강남 쪽에 진행해보고 향후 관음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 회의는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일반 줌보다 반응도 좋고 사용자에게 유리해 플랫폼 도입에 찬성하고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청년“이라는 단어로 프레임을 한정 짓는 것을 싫어함. 청년의 법상 나이가 19세에서 39세라면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음. 사업명에 청년소셜다이닝, 청년동아리 등 청년이라는 글자만 쓰기보다 새롭고 신선한 청년스러운 다른 단어로 교체 제안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들은 45만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정한 부문만 대상으로 하면 다른 계층에서 소외감도 느낄 수 있음. - 이미 구청에서 하는 다른 연령대의 사업과도 구분이 필요해서 사업명에 청년을 쓰고 있음. 좋은 의견 주셨는데 혹시 청년이라는 용어 외 더 좋은 의견 있으면 건의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회의 시 검토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음 -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없으면 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에 관련한 다양한 방면의 사업을 심도있고 자세하게 정책을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청년정책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나지만 메타버스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다른 채널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말할 것이고 의견 주시면 열심히 듣고 일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쁘게 참석해주셔서 좋은 의견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듣고 청년들을 위해 열정을 더 쏟고 실천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청년정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별첨 : 연구의원 및 보고회 현황

<연구 의원>

-김시현 대표의원-



-김현주 의원-



-서상훈 의원-



-이상봉 의원-



-이소림의원-



-이현수 의원-



-허정수의원-



<보고회 활동>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